

#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5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	2003. 11.
제출자	거창군수

## □ 제정이유

-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합동묘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
- 묘역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,
-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용 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.

## □ 주요골자

- 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함(안 제3조)
- 묘지 안장·합장의 신청서류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묘지의 규격은 5.58㎡(1.7평)로 봉분은 없으며,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6조)
- 역사교육관, 위패봉안소, 묘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11조 내지 17조)

## □ 제정근거

-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
- 지방자치법(제15조)

##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합동묘역의 설치)** ① 거창사건 합동묘지(이하 “묘지”라 한다)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.

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, 과정리 박산,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.

**제3조(안장대상자)** ① 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,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(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)을 안장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희생자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.

③ 다만,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.

**제4조(안장의 신청 등)**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5조(안장의 형태 등)**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.

②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(초혼장 포함)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묘지의 면적·규격·설치 등)**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5.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.

-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(이하 “유족회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7조(묘역의 시설물)**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·관리는 군수가 한다.

-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.

**제8조(안장비용)**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. 다만,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9조(묘적부)**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묘역의 존엄유지)**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·유흥·기타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역사교육관)**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.

**제12조(위패 봉안소)**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 봉안소를 둔다.

**제13조(희생장소보존지역 및 박산합동묘역)** 청연지역, 탄량지역, 박산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과 박산합동묘역은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한다.

**제14조(휴게소)** 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.

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5조(묘역관리)**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참배)**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·성묘·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. 다만,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본 묘역에 안장된 자 및 그 배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것으로 본다.